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(생략)	제2조 (정원의 총수) (현행과 같음)
1. 시 본 청 : 1,252명	1. 시 본 청 : 1,271명
2. 직속기관 : 121명	2. 직속기관 : 122명
3. 사업소 : 281명	3. 사업소 : 279명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3. 17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3. 17
- 라. 상정일자 : 1995. 3. 24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공사(1일 처리용량/15만톤)가 95. 6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(현재 추진공정 98%) 업무성격이 유사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통합함으로,
- 환경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※ 95. 3. 10자 환경사업소 설치승인(내무부)

나. 주요골자

- 기 구—환경사업소 설치(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 통폐합)
 - 2개사업소 6개계 → 1사업소 5개계(위생환경사업소 소장과 관리계 직제 폐지)
- 정 원—4명 감축(5급 1, 6급 1, 7급 1, 기능 10등급 1)
 - 현정원 70명 → 통합후 정원 66명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- 없 음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

의안번호	360
의결 년 월 일	95. 3. 28 (제36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3. 17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공사(1일 처리용량/15만톤)가 95. 6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(현재 추진공정 98%) 업무성격이 유사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통합으로,
- 환경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- ※ '95. 3. 10자 환경사업소 설치승인(내무부)

☐ 주요골자

- 기 구-환경사업소 설치(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 통합합)
 - 2개사업소 6개계 → 1사업소 5개계(위생환경사업소 소장과 관리계 직제 폐지)
- 정 원-4명 감축(5급 1, 6급 1, 7급 1, 기능 10등급 1)
 - 현정원 70명 → 통합후 정원 66명

☐ 근거법규 :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☐ 기타참고사항 : 별 칙

부천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

제 1 조 (설치)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환경사업소 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위치) 사업소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538번지에 둔다.

제 3 조 (업무)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

2.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
3. 방류수의 수집관리
4.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 개발
5. 시설물 내의 전기,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
6.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

제 4 조 (소장) ①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 5 조 (공무원)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6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시행으로 종전의 부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와 부천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천시새마을운동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3. 17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3. 17

라. 상정일자 : 1995. 3. 24